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Contents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I. 전형일정	2
II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3
IV. 지원자격	4
V. 국외학교 재학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8
VI. 전형방법	13
VII. 동점자 처리기준	15
VIII. 제출서류	16
IX. 장학혜택(북한이탈주민)	19
X. 전형료 및 환불규정	20
XI. 지원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21
서식자료	26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공통사항

- 가. 최종 변경사항은 원서접수 전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 www.ajou.ac.kr/iadmissions, ☎ 031-219-217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명	모집단위	재외국민(3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선발인원	선발인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7	9	적정인원	적정인원
	산업공학과★	4			
	화학공학과★	2			
	첨단신소재공학과◆	4			
	응용화학과◆	2			
	환경안전공학과★	2			
	건설시스템공학과★	2			
	교통시스템공학과◆	2			
	건축학과●	4			
첨단ICT융합대학	전자공학과◆	3	3		
	미래모빌리티공학과◆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3	4		
	사이버보안학과◆	1			
	디지털미디어학과◆	4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2	4		
	프런티어과학학부	4			
경영대학	경영학과	3	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5		
	※영어영문학과◆(5)	3			
	불어불문학과◆	2			
	사학과◆	2			
	문화콘텐츠학과◆	2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	5		
	심리학과	2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5			
의과대학	의학과	2	2		
간호대학	※간호학과(4)	1	1	-	
첨단바이오융합대학		1	1	적정인원	
다산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자연)	2	3		
	자유전공학부(인문)	1			
모집인원		40			

- 모집단위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인증기간(2024.3.1.~2026.2.28., 2년간)
-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프로그램(학사학위과정)인증 획득, 인증기간(2023.6.14.~2028.6.13., 5년간)
- 건축학과는 입학 후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4년제) 중 전공을 선택함
-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 전공
- ◆: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공
-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 심화과정 운영 / 건축공학전공(4년제)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
- ※: 교직과정이 운영되는 전공으로 ()는 교직이수 가능 인원임(변동 가능), 2학년 진급 시 교직이수자 선발
- 공학교육전문과정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의 학생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단, 해당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II.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및 안내사항
원서접수	2024.07.08.(월) 09:00 ~ 07.12.(금) 18:00	*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입학처 홈페이지 : www.iajou.ac.kr - 진학사 원서접수 : www.jinhakapply.com * 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온라인 서류제출	2024.07.16.(화)까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파일 업로드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스캔 후 PDF파일로만 제출 (사진촬영 등 이미지파일 불가) - 파일명과 형식 준수(서류제출 유의사항 참고) - 해외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함 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방역정책 등으로 이동이 통제되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확인 스캔본 업로드 후, 확인 원본 은 합격 후 최종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 가능 * 상기 제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 * 서류는 기한 내 미제출시 제출 불가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24.07.19.(금) 16:00 이후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강능력 시험	2024.07.28.(일) 10:00 ~ 11:30	* 재외국민 : 지원자 전원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의학과 지원자 * 북한이탈주민 :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 고사장 및 수험생 유의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1단계 합격자 발표	2024.08.07.(수) 16:00 이후	* 재외국민(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학과 지원자)에 한함
면접	2024.08.17.(토) 13:00 * 의학과는 별도 공지 (오전 예정)	* 재외국민 :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만 응시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전원 응시 (단, 전 교육과정 이수자 의학과 1단계 불합격자는 제외)
최초합격자 발표	2024.08.30.(금) 16:00 이후	* 입학처 홈페이지 (개별통보 없음)
최초합격자 등록	2024.12.16.(월) ~ 12.18.(수)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서등록(별도 등록예치금 납부 없이 등록의사만 확인)
충원합격자 발표	2024.12.19.(목) ~ 12.26.(목)	* 재외국민에 한하여 발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해당 없음) *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전화통보 발표 (충원발표 차수별 상이)
충원합격자 최종 등록 마감	2024.12.27.(금)	* 충원발표 차수별로 지정된 기간 내 미등록 시 등록 포기 * 세부 발표일정, 발표 방법 및 등록기한 등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등록금 납부	2025.02.10.(월) ~ 02.12.(수)	* 해당 기간 중 고지서 출력 가능
최종 서류제출	2025.02.21.(금)까지	* 최종합격자(등록자) 전원: 업로드한 모든 제출서류를 원본으로 우편 제출(2025.02.21.(금) 소인분 인정) - 원서접수시점에 지원자격 충족 예정이었던 경우(졸업 예정, 부모 국외근무기간 충족 예정자 등)는, 최종 자 격 충족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처 (울곡관 102호)

- 재외국민(3년)은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며,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지 않음
-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전형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원서접수 시 모집단위, 인적사항, 세부 자격관련 사항 등 모든 기재항목은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함.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시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입학 후 적발 시 입학 취소 등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지정된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원서접수 개시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2024.04.08.(월) 이후 발급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외발급 서류 예외)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 상기 각 일정은 학교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용은 한국표준시(KST, Korea Standard time)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Ⅲ.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1. 전형방법

지원자격	모집단위	전형방법		반영비율(%)			비고
				수강능력 시험	면접	서류평가	
재외국민 (3년)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100	-	-	면접 없음
	의학과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간호학과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 학과 (의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20명 선발
			2단계	60	40	-	
북한이탈 주민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40	30	30	-

2. 수강능력시험

모집단위	출제분야	출제범위	출제문항	시험시간
인문계열	영어(50점), 국어(50점)	한국 고교 교육과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에 준함) ※수학 : 수학, 수학 I, 수학 II ※국어 : 국어, 독서, 문학 ※영어 : 영어 I, 영어 II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90분
자연계열	영어(50점), 수학(50점)			

3. 주요 확인 사항

구분	비고
영주교포 자녀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유학생 자녀	지원 불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지원 불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별도 선발 [담당부서 : 유학생입학팀 ☎ 031-219-2171]
북한이탈주민	국내 검정고시 인정

IV. 지원자격

1. 재외국민(3년)

가.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기준	세부내용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학력요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비연속 수료 인정)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2025.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함

1)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국외파견 재직자의 경우 파견 발령기간 기준, 현지취업자의 경우 입사일~퇴사일 기준)
-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FAQ참고)

※ 부모의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자격 충족 요건

- 이혼 전 :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혼 후 : 학생과 국외근무자(부모 중 1명)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 재혼 시 : 재혼 시점부터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VIII. 제출서류의 추가 증빙서류 항목 참조

2)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 이외 단순누락학기(질병, 휴학, 자퇴, 전·편입시 월반,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이수학과와 국외 이수학과가 중복된 경우 국외 이수학과를 우선 인정함

● 학기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생 및 부모의 체류일수 산정 시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부모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출국일, 입국일, 자가격리 기간은 모두 체류일로 인정함
-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방학 및 휴일 등에 무관하게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3년에 포함될 경우에도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 개시일부터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가. 지원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기준	세부내용
학력요건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25.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자격요건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홈페이지:www.ajou.ac.kr/iadmissions, ☎ 031-219-2171)]
체류요건	* 국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 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1)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학기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학제별 지원자격 인정기준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학제별 자격 인정여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국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가.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학력요건 :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기간에 대한 인정

가.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발생한 자가격리기간은 체류일수로 인정함

나. 인정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사유 구분	소명자료 (신청서 및 관련 증빙 모두 제출)
국외 학교 휴교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2. (해당 학교) 휴교 관련 증빙 ※ 별도 증빙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 양식(수업조정 확인서) 활용
국외 지사 또는 현지법인 휴업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2. (해당 업체/본사/법인 등) 휴업 관련 증빙
기타 사유 (출국조치 등)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2. (본교 양식) 수업조정 확인서의 기타 사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학교장 확인

-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 제출 자료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을 신청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음

V. 국외학교 재학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1. 국외학교 재학 인정기준

가. 국외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가능함(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인정 불가)

나.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하며,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 홈스쿨링,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에 한해 인정함

※ COVID-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함
다.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제3국 수학 미인정)

라. 해당 학기/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2. 국외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학년 배정은 국외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 1개학년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

교육과정	12학년제	13학년제
초등학교	1~6학년	Y2~Y7
중학교	7~9학년	Y8~Y10
고등학교	10~12학년	Y11~Y13

FAQ

Q1	재외국민(3년) 재학·근무·체류 기간
----	----------------------

CASE 1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	-------------

- 학사일정 : G8(2019.8.1.~2020.6.23.), G9(2020.8.1.~2021.6.23.), G10(2021.8.1.~2022.6.23.)
- 재학기간 : G8(2019.8.1.~2020.6.23.), G9(2020.8.1.~2021.6.23.), G10(2021.8.1.~2022.6.23.)

[재학]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원칙 :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1개 학년으로 함
G8(2019.8.1.~2020.7.31.), G9(2020.8.1.~2021.7.31.), G10(2021.8.1.~2022.7.31.)
- 예외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G8(2019.8.1.~2020.6.23.), G9(2020.8.1.~2021.6.23.), G10(2021.8.1.~2022.6.23.)
※ 학생의 재학기간으로만 인정되며,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및 체류일수가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재직]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기준

- 기준 :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국외근무자의 재직 1,095일 충족과 학생의 재학기간 충족 전제로 학생의 재학기간과 연결된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있으면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형 I)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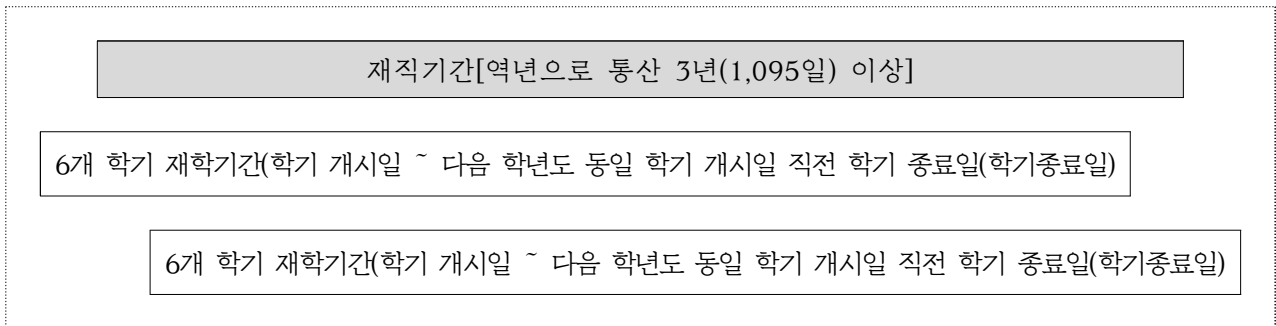
-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재직기간 : 근무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 적격 (국외근무자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함)

(유형 II) 재직기간 내 재학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직기간 : 근무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 적격 (국외근무자 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이 포함됨)

(유형Ⅲ)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



-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직기간 : 근무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 **체류일수 충족시 인정**

[체류]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학생이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CASE 2

중간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 G8(2019.8.1.~2020.6.23.), G9(2020.8.1.~2021.6.23.), G10(2021.8.1.~2022.6.23.)
- 재학기간 : **G8(2019.9.1.~2020.6.23.)**, G9(2020.8.1.~2021.6.23.), G10(2021.8.1.~2022.6.23.)
- 재직기간 : **2019.9.1.~2022.8.31.**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재학]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G8 중간에 편입하여 추가적으로 G11 1달 재학이 필요함

G8(2019.9.1.~2020.6.23.), G9(2020.8.1.~2021.6.23.), G10(2021.8.1.~2022.6.23.), G11(2022.8.1.~8.31.)

[재직]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국외근무자의 재직 1,095일 충족과 학생의 재학기간 충족 전제로 학생의 재학기간과 연결된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있으면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체류]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 1) (2019.9.1.~2020.8.31.), (2020.9.1.~2021.8.31.), (2021.9.1.~2022.8.31.)
 - 2) **G8(2019.9.1.~ 2020.7.31.)+G11(2022.8.1.~8.31.)**, G9(2020.8.1.~2021.7.31.), G10(2021.8.1.~2022.7.31.)
 ※ 1) 또는 2) 중 학생,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Q2	해외 체류일수는 보호자 243일, 학생 273일이 기준인가요?
----	------------------------------------

☞ 해외 체류일수를 365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호자 243일, 학생 273일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일수의 기준일은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는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개시일 ~ 다음연도 학기 개시일 전일]을,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는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되는 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도별 학기 개시일에 따라 기준일이 365일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체류해야 하는 일수도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3	3학기제 학교에서 10학년 2term 중간에 편입하여 10학년 3term까지 다녔습니다. 10학년 전체 수업일수 대비해서는 1/2을 채웠는데 2학기제 기준 10학년 2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 10학년 2term의 성적을 정상 취득하였다면 10학년 2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2학기제 기준 1개 학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학기 중 2개 학기를, 4학기 중 2개 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기 이수 기준은 1. 해당 학교의 이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우선 적용 2. 해당 학기 성적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해당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재학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친 후 해외 학교에서 재학을 시작했는데, 학제차이로 인해 중국에서 7학년 1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해 7학년에 중복학기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제외하면 자격요건은 충족하는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중복학기가 있다 하더라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학제 상 누락된 이수학기가 있을 경우 중복학기 이수내역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Q5	졸업을 한지 3년 이상 경과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졸업연도 제한 없이 기존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6	저는 A학과 지원자입니다. 제 친구는 같은 단과대학에 속한 B학과 지원자로 저보다 시험성적이 낮는데 제 친구는 합격이 되고 저는 예비순위를 받았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단과대학별로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합격을 하지 못한 건가요?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내 선발자는 [단과대학별 순위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최대모집가능범위] 내에서 합격이 가능하므로, 성적이 높더라도 모집단위의 최대모집가능인원을 초과하는 등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내 합격자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모집단위 지원자 중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에 따른 합격자 선발

- ② 위 순위에 의한 합격자 중 특정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모집단위의 최대모집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인원은 예비순위자로 판정
- ③ ②번 기준에 따라 예비순위자로 변경된 인원만큼 타 모집단위를 지원한 차순위자 선발
- 질문자께서는 A학과 지원자 중에서 최대모집가능인원을 초과하는 등수를 받음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7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제 차이로 인해서 1학년 1학기를 건너뛰고 1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해외 학교에서 이수하였습니다.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	---

☞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의 이수학기 부족은 인정이 가능하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8	초등학교 성적 자료를 일괄 폐기 처분하는 특정 국가(일본 등)의 경우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 제출 불가능 사유가 기재된 사유서와 해당국(초등학교)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VI. 전형방법

1. 지원자격별 전형방법

구 분		전형방법	수강능력 시험	면접	서류평가	계	비 고
재외국민 (3년)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100%	-	-	100%	면접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100%	-	-	100%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100%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 학과(의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	100%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1단계	100%	-	-	100%	1단계 20명 선발
		2단계	60%	40%	-	100%	-
북한이탈 주민	전 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	100%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일괄합산	40%	30%	30%	100%	-

※ 전형 결과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2. 수강능력시험

가. 대상 : 재외국민(3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의학과, 북한이탈주민 의학과, 간호학과

나. 평가방법 : 계열별(인문계, 자연계)로 구분하여 실시

3. 면접

가. 면접 대상

전형 구분	면접 대상자
재외국민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 전원 (단, 의학과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전원

나. 전형 방법

구분	모집단위별 전형 방법	
	전체 학과 (의학과 제외)	의학과
면접시간	* 15분 내외	* 20분(고사실당 10분씩 2개 고사실) 내외
면접진행 방식	* 각 고사실별 면접위원 2명이 1명의 수 험생을 평가 예정	* 각 고사실별 면접위원 2명(또는 3명)이 1명의 수험생을 평가 예정 * 수험생은 주제별 고사실(인성+서류, 지성 총 2개)에서 면접진행 예정 * 지성 및 인성에서는 제시문이 주어져서, 5~10분정도 사전 준비시간 제공 예정 - 지성 면접은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기반 제시문으로 진행
평가내용	* 입학 후 수강능력 및 수험생의 특성 등 에 대한 구술 면접	* 중·고교성적, 추가제출서류 등을 참고자 료로 활용하며, 과학, 기술관련 서술형 제시문에 대한 논리적 해석능력과 과학

구분	모집단위별 전형 방법											
	전체 학과 (의학과 제외)	의학과										
		적인 사고력을 측정 * 우리말로 된 지문을 주어 질문의 요지 파악 능력, 답변의 간결성과 적절성 등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										
평가항목	학교활동	<table><tr><td rowspan="5">인성/ 서류</td><td>윤리/소통/사회적 책무</td></tr><tr><td>리더십/다양성/인문소양 등</td></tr><tr><td>학업능력</td></tr><tr><td>전공적합성</td></tr><tr><td>자기개발</td></tr><tr><td rowspan="3">지성</td><td>리더십 등</td></tr><tr><td>능력/열정</td></tr><tr><td>창의성/도전성 등</td></tr></table>	인성/ 서류	윤리/소통/사회적 책무	리더십/다양성/인문소양 등	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자기개발	지성	리더십 등	능력/열정	창의성/도전성 등
	인성/ 서류			윤리/소통/사회적 책무								
				리더십/다양성/인문소양 등								
				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자기개발												
지성	리더십 등											
	능력/열정											
	창의성/도전성 등											
인성 및 가치관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의사소통 및 표현력												

※ 시간, 진행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위원 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4. 서류평가

가. 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학과, 간호학과

나. 서류평가 :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을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요소
학업능력(학업잠재력)	대학수학 기초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전공적합성	전공선택 동기 및 관심도
	학업계획 등
인성 및 태도	대인관계(협동성) 및 교과외 활동
	일반 인성(책임감, 성실성 등) 등

VII. 동점자 처리기준

1.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체 선발

2.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순 위	판 정 기 준
1순위 [수강능력시험] (해당자)	- 계열별 과목 우선순위*에 따라 과목별 총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 과목별 총점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 과목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정답 수가 많은 순으로 판정함 - 계열별 과목 우선순위 * 인문 : 국어→영어 / 자연 : 수학→영어
2순위 [면 접] (해당자)	- 총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 총점이 같은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판정함 (복수의 평가항목이 동일한 배점인 경우, 항목별 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항목이 많은 순으로 판정함)
3순위 [재학 학기 수]	- 국외학교 재학학기 수(중복학기 제외)로 판정함 - 국외학교 재학학기 수가 같을 경우, 총 재학학기 수(중복학기 제외)로 판정함

※ 상기 각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사정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입학사정회의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로 인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함)

Ⅷ. 제출서류

1. 재외국민

가. 공통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입학원서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3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4	학사일정 증빙서류 (School Calendar)	※ 학사일정 증빙서류 준비불가 시 본교양식으로 직접 작성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초·중·고 재학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 국내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7	초·중·고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8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기준 1부
9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11	여권 사본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 모, 학생 각 1부 [발행처] - 영사24(인터넷) - 해외주재영사관 - 외교부 별관(종로구)
13	의학과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	[선택] 의학과 지원자 중 희망자 추가제출서류 A4 15페이지 이내

※ 부모의 이혼, 사망, 지원자의 입양 등 특이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부모의 이혼 시: 국외근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
- 부모의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지원자의 입양 시: 지원자의 입양증명서

나. 재직 형태별 제출서류 (필수)

재직형태	제출서류	비 고
국외 파견 재직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국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기재
현지 취업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국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기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 납부이력 [◎]	
현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회사 대외비 또는 해당 국가의 세법상 금지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납부이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세금납입증명(소득세 납부기록)으로 대체 가능함

♣ 의학과 추가제출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 여부는 지원 자격과 무관함

* 추가제출서류는 면접 평가 시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제출 자료의 종류 및 발급시기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지원자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료는 추가제출서류로 제출할 수 없음 (보호자 또는 지인과 관련된 자료, 출신 교육기관 홍보자료 등)

- 입학원서,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학사일정 증빙서류(School Calendar),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 (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4.04.08.(월) 이후 발급된 서류),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해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자격요건 충족 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등록자)는 자격요건의 최종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2025.02.21.(금)까지 우편 제출해야 하며(당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예시

- 2024년 2학기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로, 10학년 1학기 ~ 12학년 2학기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원서접수 시점(7월)에 제출한 자격 관련 서류상 12학년 2학기의 국외근무기간, 국외체류기간, 국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에 대한 최종증명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합격 및 등록 후 2025.02.21.(금)까지 최종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외근무기간 확인 : 국외근무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 국외체류기간 확인 : 지원자, 부, 모의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 재학기간 및 학력요건 확인 : 지원자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국내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6개국 34개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및 기타 특이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제출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따라 본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입학원서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3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 재학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 국내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6	초·중·고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7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기준 1부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9	여권 사본	※ 학생 기준 1부
10	의학과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	[선택] 의학과 지원자 중 희망자 추가제출서류 A4 15페이지 이내

[△] 의학과 추가제출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 여부는 지원 자격과 무관함

* 추가제출서류는 면접 평가 시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제출 자료의 종류 및 발급시기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지원자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료는 추가제출서류로 제출할 수 없음 (보호자 또는 지인과 관련된 자료, 출신 교육기관 홍보자료 등)

- 입학원서,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4.04.08.(월) 이후 발급된 서류),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해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국외학교(재외 한국학교 포함)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를 2025.02.21.(금) 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6개국 34개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제출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따라 본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입학원서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추천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4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 학교 재학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5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행처] - 정부24(인터넷)
6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	※ 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7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새터민장학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의학과 지원자)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	[선택] 의학과 지원자 중 희망자 추가제출서류 A4 15페이지 이내

Ⓢ 의학과 추가제출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 여부는 지원 자격과 무관함

* 추가제출서류는 면접 평가 시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제출 자료의 종류 및 발급시기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지원자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료는 추가제출서류로 제출할 수 없음 (보호자 또는 지인과 관련된 자료, 출신 교육기관 홍보자료 등)

- 입학원서, 추천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2024.04.08.(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추천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만 제출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포함)를 2025.02.21.(금)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합/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IX. 장학혜택(북한이탈주민)

구분	새터민장학
혜택 상세	•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국비 50%, 교비 50%)
수혜 자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자
유의사항	• 새터민장학은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전적대학에서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이력을 포함하여 수혜가능 횟수 내에서 지급함 • 장학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며(자비 납부 등록), 장학 수혜가능 횟수 1회는 그대로 소진됨에 유의 (2024학년도 기준 장학 유지 성적기준 : 직전학기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장학 유지기준은 학년도별로 변동될 수 있음(문의 : 학생지원팀 031-219-2035) • 휴학/복학/해외파견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방학 중인 경우 학기 개시일 1개월 전 까지, 학기 중일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지원팀 연락 필수(새터민장학은 등록횟수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요망)

X. 전형료 및 환불규정

가. 전형료: 150,000원

나. 전형료 환불

- 1)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타지원자의 피해방지(예: 경쟁률 조작)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의 사유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 2) 전형료 반환사유(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②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2)의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시기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이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70%
원서접수 마감 4일 후부터 수강능력시험 전까지	전형료의 50%
수강능력시험 이후	반환하지 않음

※ 타대학과의 입학전형일정 중복 또는 개인사정 등의 경우에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를 반환함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입학전형료) 제5항)

XI. 지원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수시모집 합격자의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가. 복수지원 금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충원)는 등록(예치금 납부, 문서등록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실시하는 이후 모집(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이중등록 금지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수시 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등록이란 등록예치금을 납부(문서등록)한 상태를 의미함)
- 3) A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수험생이 B대학에 합격하여 B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A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예치금/등록금 환불신청 접수 등)한 후 B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폴리텍대학,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3.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

가.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횟수 계산 기준은 전형임

나.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수시모집에서 타 대학 및 동일대학의 다른 전형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된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될

4. 입학원서 작성 요령

가.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창구 접수 없음)

나.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다. 원서의 모든 기재정보는 제출 서류와 일치하여야 함(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원서접수 사항과 학생부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 『지원자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 수정요청서』(본교 양식)를 작성하여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초본 동봉 제출

5. 입학원서 접수 절차 및 방법

- 가.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 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에서 접수
- 나. 로그인(원서접수 홈페이지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다. 아주대학교 선택(원서접수 대학 중 선택)
-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마. 입학원서 작성/사진 업로드
- 바. 전형료 결제(결제 전 입력 사항 반드시 확인)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전형료 결제 후에도 기본정보 및 사진 수정은 가능함
(단, 전형 및 지원학과는 수정 불가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전체 수정 불가함)
- 사. 원서접수 완료(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임)
- 아. 서류제출 : 전형별 제출서류를 제출마감일(2024.7.16.(화))까지 업로드

6.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됨(접수기한 내 결제 미완료 시 접수 무효)
- 나. **전형료 결제 후 접수가 완료된 원서는 지원 철회나 전형/학과 변경, 환불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해야 함(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수정 가능)
- 다. 원서접수 여부 및 경쟁률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
- 라. 수험표 및 본교 양식 서류는 원서접수 후 접수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
- 마.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
- 바. 문의처: 031-219-3200, 3211

7.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 가. 원서 접수 후 전형별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 누락 시 해당 서류 미반영 또는 자격미달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지 방역정책 등으로 이동이 통제되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아래 기한까지 제출 허용
- 나. 서류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스캔본을 업로드하고, 최종합격자(등록자)는 반드시 원본 서류 전체를 우편제출(2025.02.21.(금))해야 하며, 기한 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원서접수 당시 자격요건 충족 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등록자)는 자격요건의 최종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동봉 제출)
- 다. 최종합격자(등록자) 서류제출
 - 일반 서류봉투(A4사이즈)에 발송용봉투표지(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를 부착하고, 제출서류 해당 □란에 체크(V)하여 우편 제출(등기우편, 택배)
 -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팀 (울곡관 102호)
- 라. 온라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문서(hwp, doc 등)나 이미지가 아닌 실제 출력한 서류의 스캔본(pdf)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미준수로 인한 서류반영 누락 및 자격미달 등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각 제출서류는 서류 1개 항목 당 1개 파일로 생성한 후 전체 파일을 압축하여(.zip) 업로드
→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파일 생성
 - ①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원서접수 완료
 - ② 제출해야 하는 각 서류를 모두 출력 및 서명(서명란이 있는 경우)
 - * 입학원서, 본교양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의 중앙 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③ 출력한 서류 및 지원자격 서류 등을 스캔하여 개별 파일로 저장
(예시; 01.입학원서.pdf, 02.초중고수학기간기록표.pdf, 03.해외학교관련기록표.pdf 등)
- ④ 스캔한 파일을 수험번호9자리.zip 형태로 압축
(압축된 파일의 파일명은 332100001.zip과 같이 수험번호 9자리로 설정)
- ⑤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제출서류 출력 페이지 참고)

서류제출 파일 구성 안내	
최종 업로드 파일	압축 전 파일 목록
 332100001	 01. 입학원서  02.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03.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04. 학사일정 증빙서류  0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06. 초·중·고 재학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07. 초·중·고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07. 출입국사실증명서  08. 가족관계증명서  09. 출입국사실증명서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11. 여권 사본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3. 의학과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 상기 리스트는 예시이며, 본인의 전형에 해당하는 파일들로 제출	

- 각각의 파일명은 모집요강 상의 [제출서류] 항목에 있는 명칭 및 해당 서류의 공식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scan07141102.pdf와 같이 파일명으로 서류 내용을 구분할 수 없거나 서류 내용과 다른 파일명을 설정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파일 손상 및 낮은 해상도, 암호 설정, 스캔 오류 등으로 인하여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서류 인정 불가
- 온라인 제출 시에도 반드시 서류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2024.07.16.(화) 23:59까지)
- 업로드 가능용량 초과 등으로 온라인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제출
 - 원서 접수 시 입력한 지원자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한 서류만 인정하며, 이메일 제출 시에도 제출기한은 동일함(해당 메일주소 외 발송 시 접수 불가)
 - 제출 이메일 주소 : enter@ajou.ac.kr

마. 수험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024.07.19.(금) 16:00 이후)

바.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아포스티유(영사확인)를 받은 서류의 복사본, 복사본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를 받은 서류 두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함. 단, 최종합격자(등록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영사확인)를 받은 원본서류를 아래의 기한까지 제출해야함
- 최종합격자(등록자) 서류제출 기한 : 2025.02.21.(금)까지
- 수험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팀 (울곡관 102호)
(문의 : 031-219-3200, 3211)

8. 합격자 발표 안내

- 가. 합격자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을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안내 예정
- ※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단, 미등록충원을 하는 전형은 발표 진행 상황에 따라 전화로 통보할 수도 있음)
 - ※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9. 신입생 등록금

- 가. 합격생은 각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정해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장학생의 경우에도 장학 결제를 진행해야함)
- 나. 합격사실이 있는 지원자는(합격 후 미등록자 포함) 수시전형 합격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금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에 따른 등록금 면제 대상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보훈장학 신청서를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입학 후 별도 환불 처리함)
- ※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처리를 마쳐야 함
 - ※ 국가보훈대상자 장학 관련 문의: 학생지원팀 031-219-2038, 입학팀 031-219-3213
 - ※ 등록금 대출 관련: 학생지원팀 031-219-2036
 - ※ 신입생 장학 관련: 입학팀 031-219-3213

10. 등록포기 및 환불

- 가. 대상: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
- 나. 신청방법: 입학처 홈페이지 신청(www.iajou.ac.kr)
- 다. 유의사항
- 1) 환불신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사항 참고
 - 2) 충원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합격기회 박탈 및 해당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타대학 등록결정 즉시 지체 없이 환불 신청을 해야 함(마감일 이전 필수)
[기일 경과 후 환불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 3) 환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최초/충원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참고

11.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 가.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제반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지원자격미달, 주요사항 누락 등 입학전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다.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취소 및 민·형사상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세부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름)

12. 신입생 생활관 입사안내

가. 생활관 구성

건물명	구분	사용인원	비용 (2024학년도 기준)
국제학사	남/여	2인1실	1,440,000원 / 학기
광고관	여	4인1실	747,000원 / 학기
용지관	남	4인1실	747,000원 / 학기
일신관	남/여	4인1실	1,113,000원 / 학기
	간호대, 의대 남/여	2인1실	1,602,000원 / 학기

※ 비용은 한 학기/1인 지불금액이며, 식비는 별도(자유매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dorm.ajou.ac.kr) ‘생활관 스케치’, ‘생활안내’를 참조

나. 선발기준

1) 신입생 배정 기준

- 기숙사 입사보장 혜택 장학생 우선 배정

- 기숙사 입사보장 혜택 장학생 배정 이후 잔여분에 대하여 실제거리 순 배정

※ 단, 거리 순 배정에 의해 동일순위 발생 시 입사회망동, 외국인 룸메이트 동의 여부(국제학사에 해당) 등에 따라 선발

2) 신입생 기숙사 입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으로 별도 공지 예정

3) 원서 입력 주소와 실제 거주지(현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문의

구 분	연락처
선발 및 제출서류 관련	031-219-3216
생활관 시설 등 이용 관련	031-219-2144

13.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가. 자격심사 기간 중(심사 결과 확정 이전) 수강능력시험 및 면접평가가 시행되므로 응시 여부 또는 결과와 상관없이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나. 입학전형 결과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 및 순위와 상관없이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 입학전형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공지

라.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마. 고교 졸업예정자의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 불가 또는 체류일수 미달 등 자격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개별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북한이탈주민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추천서 (견본 - SAMPLE)
※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 지원자 정보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지원학과	학과								

■ 추천인 정보

추천인 성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소속			지원자와의 관계	(지원자 기준)
교류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 아래 사항은 추천인이 교사인 경우만 작성해주세요.				
지도과목		교사경력	년 개월	

[추천인 유의사항]

1. 추천인(지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지원자를 오랜 시간 지켜보신 분으로 추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며, 교사가 아닌 경우 교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천할 수 없는 사람 : 학원강사 및 학원장, 과외교사, 본인, 가족, 친척, 친구, 기타 특수관계자
2.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형과정에서 추천서와 기재 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한 추천서는 학생 제출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십시오.
※ 하단의 추천인 서명을 반드시 추천인 자필로 해야 합니다.
5. 지원자의 학업 및 잠재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추천서 작성 시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실명 및 추상적 직종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파일로 본문을 작성할 경우 추천서의 서식, 글자크기, 줄간격 등을 절대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확인사항]

1. 본인은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귀하가 이 추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은 추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추천인 확인 서약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약할 경우에는 향후 귀하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추천인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4. 본인은 추천서 작성 시 지원자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가 금지되며, 기재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의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고,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이
제
부

추천인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추천서

1-1.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해당란에 'O' 로 표기하고, 평가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 또는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대상			미흡	보통	우수함	매우 우수함	탁월함	평가 불가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 책임감									
2) 성실성									
3) 준법성									
4) 자기주도성									
5) 리더십									
6) 협동심									
7) 나눔과 배려									

* 평가대상 부분은 지원자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1-2. 위 평가항목 중 구체적 사례를 열거할 수 있는 경우 적어 주십시오.
(굴림체, 글자크기 10, 띄어쓰기 포함 글자수 500자 이내)

2. 지원 학과(의학과 또는 간호학과)를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비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추천하여 주
십시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반복 기술하지 말아 주십시오)
(굴림체, 글자크기 10, 글자수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가급적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초 · 중 · 고 수학기간 기록표 (견본 - SAMPLE)

※ 원서접수 후 조희페이지에서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과정	재학학년, 학기	재학기간 (YYMMDD)	학교명	소재국
ex) 초등	1-1 ~ 6-2	13.03.02. ~ 19.02.28.	중앙초등학교	한국
ex) 중등	7-1 ~ 9-1	19.03.02. ~ 21.06.30.	중앙중학교	한국
ex) 중등	9-2 ~ 9-2	21.08.01. ~ 21.12.31.	Central Middle School	필리핀
ex) 고등	10-1 ~ 11-2	22.04.02. ~ 23.11.30.	Central High School	미국
ex) 고등	11-2 ~ 12-2	23.12.01. ~ 25.02.28.	중앙고등학교	한국

(12학년제 교육과정 기준 기재, 필요 시 행 추가)

특이사항	보호자의 이혼, 사망, 지원자의 입양 지원자의 중복수학학기, 월반, 특정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 후 관련 증빙 첨부
------	--

※ 아래의 두 표는 재외국민(3년특례) 지원자만 작성함

국내 총 재학학기 수			외국 총 재학학기 수									
해외재학기간			해외 이수학기에 ○ 표기 (12학년제 교육과정 기준, 6개 이상 표시) 고등학교(10학년 ~ 12학년) 중 1년(2개 학기)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학년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해외재학 해당학기												

구 분	학력요건기간 중 외국거주기간 (발령, 영주 등)	거주 국가명	영주(시민)권 취득일 (해당자에 한함)	기타 특이사항
보호자1 • 관계 () • 성명 ()	~			
	~			
	~			
	~			
보호자2 • 관계 () • 성명 ()	~			
	~			
	~			
	~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인 또는 서명)

해외학교 관련 기록표 (건본 - SAMPLE)

※ 원서접수 후 조희페이지에서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해외 재학기간 (학년·학기)	학교명	학제		주 소 (학교 홈페이지, e-mail 포함)
		학년제	연간 학기 수	
1-1 ~ 6-2	연대한국 국제학교	12학년	2학기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7-1Q ~ 9-3Q	Central Middle School	12학년	4Q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9-2 term ~ 13-3 term	British Royal High School	13학년	3term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				학교주소: 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 재학한 외국소재 학교만 초, 중, 고교 순으로 기재(해당 학교의 공식 명칭 기입)
 ※ 전화번호는 국가코드를 포함하여 「(국가코드)-(지역코드)-(전화번호)」 형태로 기재 (예 : 한국 82-2-2173-2074)
 ※ 학교명 및 주소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정확히 기재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인 또는 서명)

※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인 또는 서명)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의학과) (견본 - SAMPLE)

※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 추가제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 양식을 작성한 후, 아래 목록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추가제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2. 추가제출 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추가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3. 추가제출서류는 A4 단면 총 15쪽 이내로 제출
(1페이지에 1개 내용만 출력, 모아찍기 또는 양면인쇄 불가)
 4. 집게 혹은 클립 사용(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클리어파일 사용 불가)
 5. 추천서는 추가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 ※ 상기 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미반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번호	서류내용 (성적자료의 경우 성적값도 기재 예: SAT 1000점)	서류발급기관	서류 발급일자	비고
1	예) 재학원 봉사활동 경력 : 치매노인 돌봄 활동 120시간	00복지관	2021.04.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AMPLE-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1. 색상이 어두운 란만 신청인이 작성합니다.(보호자 및 학생 본인 각각 1부씩 작성)
2. 보호자,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여권사본)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v]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 학력요건(3년 또는 1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입력				
용도 (Purpose) 대학입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아주대학교 입학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Telephone no.) 031-219-3200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 입학 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아주대학교 입학처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건본 - SAMPLE)

※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성명		영문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지원자격 인정 희망 기간		인정 요청 사유
일자	해당 학년/학기	
~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 신청 가능
- ※ 심사 과정에서 확인 및 별도 증빙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이 미비하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 제출 자료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인정 희망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수 있음
- ※ 필요 시 행 추가 가능
- ※ 인정 요청 사유는 최대한 정확히 기재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인 또는 서명)

Confirmation of Class Adjustment

(Due to COVID-19) (견본 – SAMPLE)

※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Class adjustment type	
Name of School	
Period	to
Class adjustment type	☐ Temporary closure ☐ Commuting restriction (online class) ☐ Other ()

Person in charge of confirmation	
Name	
Position	
Contacts	Phone number :
	e-mail address :

Information of the student (requester for confirmation)	
Name	
Birth date	
Reason for request	Applica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stamp & seal)

지원자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

(SAMPLE-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 확인)

-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메일로 제출 (enter@ajou.ac.kr)
- 2.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입학처로 전화문의(031-219-3200) 후 발송

모집시기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단위	학과	전 형 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험번호		성 명	
연 락 처	보호자 연락처		
변경사항			
수정 요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자세하게 기록)			
전형 및 모집단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 명)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 원서에 기재한 본인의 메일주소에서 발송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본인 확인용)